

원적산터널 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사업

변경 실시 협약

2013. []. [].

인천광역시

더케이원적산터널 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총 칙

| | |
|----------------------|---|
| 제 1 조 (협약의 목적) | 1 |
| 제 2 조 (정의) | 1 |

제 2 장 기본약정

| | |
|-------------------------------------|---|
|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 7 |
| 제 4 조 (소유권의 귀속과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 8 |
| 제 5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8 |
| 제 6 조 (인천광역시의 감독·명령) | 8 |

제 3 장 관리운영권과 자금차입

| | |
|---------------------------------------|----|
| 제 7 조 (관리운영권가치) | 9 |
|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 9 |
| 제 9 조 (자금재조달) | 10 |
| 제 10 조 (출자자와의 합병과 출자자에 대한 이익분여) | 10 |

제 4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 |
|--|----|
| 제 11 조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및 보고) | 11 |
| 제 12 조 (관리운영계획 및 유지보수계획) | 13 |
| 제 13 조 (보험가입) | 13 |
| 제 14 조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 14 |
| 제 15 조 (관리운영위탁) | 14 |
| 제 16 조 (관리운영비) | 17 |
| 제 16 조의2 (기준사업수익률) | 18 |
| 제 17 조 (통행료의 징수) | 19 |
| 제 18 조 (통행료의 결정) | 19 |
| 제 18 조의2 (통행료의 조정) | 19 |
| 제 19 조 (회계장부와 기록유지) | 21 |
| 제 20 조 (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 | 22 |
| 제 21 조 (부대사업) | 23 |
| 제 22 조 (경미한 수익사업 등) | 23 |
| 제 23 조 (민원처리) | 24 |
| 제 24 조 (이사회) | 24 |

제 5 장 인천광역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
|---|----|
| 제 25 조 (인천광역시의 자금제공 및 초과사업수입의 충당) | 25 |
| 제 26 조 (자금제공의 방법) | 26 |

제 6 장 위험의 배분

| | |
|-----------------------------------|----|
| 제 27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27 |
| 제 28 조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28 |
| 제 29 조 (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 | 28 |
| 제 30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 30 |

제 7 장 협약의 종료

| | |
|---------------------------------------|----|
| 제 31 조 (협약기간의 만료) | 31 |
| 제 32 조 (협약의 해지) | 32 |
| 제 33 조 (매수청구권) | 34 |
| 제 34 조 (해지시지급금) | 34 |
| 제 35 조 (협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 36 |

제 8 장 권리의 처분

| | |
|-------------------------------|----|
| 제 36 조 (양도) | 37 |
| 제 37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 37 |
| 제 38 조 (투자자 및 주식지분의 변경) | 38 |

제 9 장 분쟁의 해결

| | |
|-----------------------|----|
| 제 39 조 (분쟁의 해결) | 39 |
| 제 40 조 (중재) | 39 |

제 10 장 기타사항

| | |
|---------------------------|----|
| 제 41 조 (협약의 변경) | 40 |
| 제 42 조 (협약의 수익자) | 41 |
| 제 43 조 (일부무효) | 41 |
| 제 44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 41 |
| 제 45 조 (비밀유지) | 41 |
| 제 46 조 (통지) | 42 |
| 제 47 조 (준거법) | 43 |
| 제 48 조 (협약의 효력) | 43 |
| | |
| 부록 1 (출자자와 출자지분) | 45 |
| 부록 2 (관리운영권가치) | 46 |
| 부록 3 (관리운영비) | 50 |
| 부록 4 (보험가입) | 52 |
| 부록 5 (해지시지급금) | 53 |

변 경 실 시 협 약

인천광역시와 더케이원적산터널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하며,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 각자를 “협약당사자”라 하고, 총칭하여 “협약당사자들”이라 한다)는 2013년 []월 []일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사업(변경전 사업명: “철마산터널 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실시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축조공사 민자유치시설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하고,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한다)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1997년 3월 13일 체결되고, 2000년 10월 28일 및 2004년 6월 2일 각 변경된 실시협약(그 수정, 변경 및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기존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제48조(협약의 효력)에 따라 본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하 “효력발생일”이라 한다)의 직전일까지 적용하고,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용어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경미한 수익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제4항 단서 및 본 협약 제22조(경미한 수익사업 등)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말한

다.

“관리운영계획”이라 함은 제12조(관리운영계획 및 유지보수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인천광역시가 민간투자법 및 기존실시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말한다.

“관리운영권가치”라 함은 제7조(관리운영권가치) 제1항에 따라 협약당사자들이 관리운영권가치로 합의한 금액을 말한다.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이라 함은 어느 분기에 직전 분기말 현재의 관리운영권가치에서 상각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매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은 부록 2 (관리운영권가치)에 기재된 바와 같다.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이라 함은 관리운영권가치에서 발생되어야 하는 기대수익으로서 직전 분기말의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하여 당해 분기의 초일부터 당해 분기의 말일까지 기준사업수익률로 일할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관리운영비”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계획 및 유지보수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제16조(관리운영비)에 따라 확정된 관리운영비를 말한다.

“관리운영위탁계약”이라 함은 제15조(관리운영위탁)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탁하기 위하여 체결될 계약을 말한다.

“관리운영자”라 함은 제15조(관리운영위탁)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기존실시협약”이라 함은 제1조(협약의 목적)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기준사업수익률”이라 함은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비율로서 제16조의2(기준사업수익률)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담보권”이라 함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적,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체사업자”라 함은 제37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된 자를 말한다.

“매수청구권”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와 본 협약 제33조(매수청구권)에 따른 본 사업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말한다.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시행 중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하며, 본 협약 체결일 후 개정 또는 대체가 있는 경우 그 개정 또는 대체 법률을 포함한다.

“민간투자법시행령”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시행 중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말하며, 본 협약 체결일 후 개정 또는 대체가 있는 경우 그 개정 또는 대체 시행령을 포함한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그 후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본 사업”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유지보수와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를 부과·징수하는 사업을 말하며, 경미한 수익 사업을 포함한다.

“본 사업부지”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통과지역으로서 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본 사업의 대상 시설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 부평구 산곡동간 원적산터널, 접속도로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본 협약”이라 함은 본 변경실시협약을 말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와 본 협약 제21조(부대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분기”라 함은 해당 년도의 1분기(1월 1일부터 3월 31일), 2분기(4월 1일부터 6월 30일), 3분기(7월 1일부터 9월 30일) 및 4분기(10월 1일부터 12월 31일)를 말하며,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경우 효력발생일로부터 다음 분기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본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협약의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의 초일부터 본 협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제29조(불가항력사유와 그 처리)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사업수입”이라 함은 통행료수입, 경미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보험금 중 보험의 목적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 및 기타 사업시행자가 얻는 모든 수입을 말한다.

“사업연도”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효력발생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본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협약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본 협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사업운영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다만, 당해 분기 중에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분기의 초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할한 금액으로 한다)
2.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다만, 당해 분기 중에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분기의 초일로부터 본 협약의 해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할한 금액으로 한다)
3.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다만, 인천광역시가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제외한다.)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유지보수”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활한 교통과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자금재조달”이라 함은 최근 자금차입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하여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을 극대화 하려는 행위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한 것을 말하며, 출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거나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인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의 변경을 포함하되, 본 협약에 따라 예정된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자본구조 또는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자금제공금액”이라 함은 제25조(인천광역시의 자금제공 및 초과 사업수입의 충당)에 따라 어느 분기의 사업수입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할 경우 인천광역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자금차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 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금차입계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체결한 자금차입계약(출자자가 차주로서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와 출자자의 합병으로 사업시행자가 차주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자금차입계약의 변경 계약이나 자금차입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금차입계약을 포함한다.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공과금과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주식매매계약”이라 함은 출자자가 사업시행자의 발행 주식 전부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3년 []월 []일 []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와 합병전 투자자)에게 총채무를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을 말하며,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총채무”라 함은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와 합병전 출자자를 포함함)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채무의 원리금(조기상환수수료 포함)을 말한다.

“출자자”라 함은 부록 1 (출자자와 출자지분)에 출자자로 기재된 자를 말한다.

“통행료”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통행차량으로부터 징수할 민간투자법상의 사용료로서의 통행료를 말한다.

“통행료수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수입을 말한다.

“해지시지급금”이라 함은 본 협약 제34조(해지시지급금)에 따른 본 협약의 해지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협약기간”이라 함은, 제32조(협약의 해지)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효력발생일로부터 []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효력발생일”이라 함은 출자자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시행자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날로서 본 협약의 체결일(2013년 []월 []일)을 말한다.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과 기존실시협약에 따라 설정·부여 받은 다음 각 호의 지위, 권한과 권리를 협약기간 동안 유지·보유함을 확인한다.

1.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2.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한 본 사업부지의 무상사용
3.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
4. 본 협약과 관리운영권에 따른 통행료의 부과·징수를 위한 권리

5. 본 협약 제21조(부대사업)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
6. 본 협약 제22조(경미한 수익사업등)에 따라 경미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

제 4 조 (소유권의 귀속과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 ① 인천광역시는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을 가진다.
- ②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보유한다.
- ③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라 가지는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제 5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과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인천광역시의 감독·명령)

- ① 인천광역시는 관련 법령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할 권리를 가지며, 민간투자법 제45조(감독·명령)에 따라 본 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인천광역시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위탁 등을 통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조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는 그러한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그 선정내용과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③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인천광역시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리운영권과 자금차입

제 7 조 (관리운영권가치)

-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운영비의 산정시 적용되는 관리운영권가치를 효력발생일 현재 기준으로 금[]원(W[])으로 합의한다.
- ② 매 분기말의 관리운영권가치의 잔액은 부록 2 (관리운영권가치)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본 사업을 위한 차입금을 조달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자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은 자금차입계약에서 예정된 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자금차입계약에서 예정되지 아니한 담보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 (자금제조달)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제조달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자금차입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하여 자금제조달로 인천광역시의 재정 부담 최소화가 가능한 경우,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제조달을 추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와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 10 조 (출자자와의 합병과 출자자에 대한 이익분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 현재의 출자자와 합병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러한 합병과 그러한 합병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자기주식 취득, 부채 부담 및 출자자의 변경을 승인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감사, 이익배당 기타 출자자에게 여하한 이익을 분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가 제25조(인천광역시의 자금제공 및 초과사업수입의 충당) 제4항에 따라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을 조기에 지급하거나 제34조(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조기상환수수료를 포함함)의 상환과 함께 출자자에게 감사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11 조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및 보고)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과 인천광역시가 승인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계획 및 유지보수계획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사업시설의 시설이용자들에게 안전과 편의가 최대한 도모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사업시설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협약기간 동안의 관리운영계획 및 유지보수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운영계획 및 유지보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승인 신청을 인천광역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위 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이에 관한 승인 또는 의견을 사업시행자에 통지한다. 변경된 관리운영계획 및 유지보수계획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존에 승인 받은 관리운영계획 및 유지보수계획에 따라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계획 및 유지보수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조정과 본 협약의 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및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 위탁된 업무를 초과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제16조(관리운영비) 제3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기로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매 사업연도

2월말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실적, 부대사업 실적, 경미한 수익사업 실적 등을 인천광역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입체적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입체적 교통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인천광역시가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정밀안전진단과(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과(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밀안전진단과(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비용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가 필요하게 된 원인에 따라 제16조(관리운영비) 제3항이 적용될 것을 조건으로 인천광역시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불가항력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29조(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⑦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가 인천광역시가 승인한 유지보수계획, 관리운영계획 및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천광역시가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등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⑧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기간

동안 특정인에 대하여 본 사업시설의 이용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

제 12 조 (관리운영계획 및 유지보수계획)

- ① 관리운영계획 및 유지보수계획은 터널 운영 관련 기관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기준, 일반적 산업기준과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본 사업시설을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관리운영계획에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반에 관한 상세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규정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등을 작성 및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15조(관리운영위탁)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관리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④ 유지보수계획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점검 및 정비 계획과 그 이행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3 조 (보험가입)

-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부록 4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위 제1항에 따라 가입예정인 보험계획 및 보험조건을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위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적기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 후 10일 이내에 보험증권의 사본을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1월 31일까지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 인천광역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청구를 제기한 경우 동 청구서의 사본을 7일 이내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을 그 정한 조건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본 협약에 따른 보험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말미암아 발생하는 본 사업의 복구비용 기타 손실은 사업운영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가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가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사업수입으로 간주한다.

제 14 조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 ① 사업시행자는 기존실시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와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업무로서 효력발생일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의무가 있는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라도 자신의 책임으로 그와 같은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효력발생일 이후 본 사업시설에 관하여 여하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설계와 공사에 관한 기존실시협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하자를 보수하거나 치유할 업무를 이행한다.

제 15 조 (관리운영위탁)

-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관리운영자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에게 해당 관리운영위탁계약의 내용을 보고하고 인천광역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운영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관리운영위탁계약의 내용이 도로법, 교통안전법 기타 관련 법령과 본 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관리운영위탁계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인천광역시와 이용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관리운영자가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할 것
4.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5. 관리운영자가 직접 인천광역시에게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규정할 것
6.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고 직접 관리운영자의 업무를 감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자가 인천광역시의 감독에 적극 협력하고, 인천광역시의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7. 관리운영자가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 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할 것(다만, 관리운영자는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청소업무 등 경미한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8.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고나 파손 등에 대한 관리운영자의 책임을 명시할 것
9. 관리운영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효과적인 제재 및 벌칙 조항을 규정할 것

10. 관리운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자가 입은 통행료수입 손실에 대한 관리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할 것

- ③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도로법, 교통안전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운영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허가, 면허, 승인 등(있는 경우)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있는 경우)의 절차를 거칠 것
 2. 도로(터널)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④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를 관리운영자 또는 그 하수급인이 이행하거나 인천광역시가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 ⑤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게 추가비용의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하한 의사결정 또는 관리운영자에 대한 권리 행사(해지권 행사를 포함한다)나 지시를 하고자 할 경우,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자에게 여하한 통지나 청구를 하거나 관리운영자로부터 여하한 통지, 청구나 보고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인천광역시에게 통지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위탁계약과 관련된 여하한 의사결정 또는 관리운영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해지권 행사를 포함한다)나 지시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없더라도 인천광역시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관리운영위탁계약과 관련된 여하한 의사결정 또는 관리운영자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 16 조 (관리운영비)

- ① 본 협약에 따라 사업운영비로 인정되는 관리운영비는 부록 3 (관리운영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만, 협약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매 3년 단위로 관리운영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효력발생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6월말까지 관리운영비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인천광역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관리운영비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운영비 변경에 관한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운영비 변경에 관한 합의가 효력발생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합의가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부록 3 (관리운영비)에 기재된 관리운영비를 우선 집행한 후, 집행된 관리운영비와 변경합의된 관리운영비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관리운영비 변경에 관한 합의가 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인천광역시는 부록 3 (관리운영비)에 기재된 관리운영비를 사업운영비로 인정하기로 한다.
- ② 실제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관리운영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 ③ 효력발생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업무와 비용에 관하여는 협약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추가비용,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 비용 및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은 관리운영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 요구, 법령의 변경(제정과 개정을 포함한다)이나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관리운영비로 수행하기로 예정된 업무를 초과하는 업무와 비용(다만, 불가항력사유의 경우, 제29조(불가항

력사유 및 그 처리)에 따른다)

2. 제14조(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에 따른 업무와 비용

3.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비로 수행하기로 예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로서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요청하여 인천광역시가 승인한 업무와 비용

- ④ 협약당사자들은 제1항의 관리운영비 변경을 위한 협의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비를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16 조의2 (기준사업수익률)

- ① 기준사업수익률은 (가) 관리운영권가치 중 금[]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고정수익률과 (나) 관리운영권가치 중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변동수익률을 가중평균한 비율로 하며,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 ② 제1항의 고정수익률은 연[]%로 한다.

- ③ 제1항의 변동수익률은 매 1년 단위로 변경되는 것으로 하고, 효력발생일과 그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5영업일 동안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국고채 5년 만기 채권 민평(민간채권평가기관) 평균수익률을 산술평균한 비율에 가산금리 연[]%를 더한 비율로 하며,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 ④ 제3항의 국고채 5년 만기의 잔존만기별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만기가 5년 이상인 국고채 중 5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국고채의 민평(민간채권평가기관)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변동수익률을 결정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변동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제9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동수익률을 결정한다.

제 17 조 (통행료의 징수)

-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본 사업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해당 통행료에 추가하여 국내 유사 시설의 운영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부가금 비율에 준하여 부가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말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사업시설의 교통량, 통행료수입 기타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인천광역시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통량 현황과 통행료수입을 확인할 수 있다.

제 18 조 (통행료의 결정)

- ① 제17조(통행료의 징수) 제1항의 통행료는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별도로 승인받은 통행료를 부과·징수한다.

제 18 조의2 (통행료의 조정)

- ①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1월말까지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통행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에 통지(이하 “통행료통지”라 한다)하고 이에 대하여 승

인을 얻어야 한다.

1. 관리운영비 및 예상이용수요 등 통행료산정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한 적정통행료
 2. 최초 통행료 산정 또는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산출자료
 3. 통행료 징수방법
 4. 유사 시설의 통행료 및 조정 현황
 5. 부정이용시 부과하는 부가금
 6. 기타 통행료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통행료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 ③ 인천광역시는 통행료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통행료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통행료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통행료조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의 서류를 인천광역시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인천광역시는 통행료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통행료조정 요구와 별도로 할인통행료, 특정대상에 대한 통행료감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하 제1항 또는 제4항의 승인을 받은 통행료를 “조정통행료”라 한다.) 사업시행자는 조정통행료의 부과 예정일 30일 전에 조정통행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

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통행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승인이 예상되는 조정통행료를 포함하여 통행료의 조정과 관련된 일체의 공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통행료 조정과 관련된 공고를 할 수 있다.
- ⑨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에 대한 승인이 조정통행료의 부과 예정일 30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조정통행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⑩ 제9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정통행료 공고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제7항의 운임을, 그 다음날부터는 조정통행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 19 조 (회계장부와 기록유지)

-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 및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자신의 운영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매년 감사하게 하고,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인천광역시에 제출하도록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공사에 관한 기록을, 직접 또는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유지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 및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가 본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요청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을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기타 중요한 계약(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은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

- ① 사업시행자가 협약기간 동안 지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15조(관리운영위탁)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지적재산 및 관리운영자가 취득한 지적재산의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에 그 등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천광역시가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적재산을 법령상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며,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관리운영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권리는 비독점적이며, 본 사업시설을 운영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 협약기간의 만료시 또는 본 협약의 해지시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과 관련하여 획득 및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인천광역시에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한다. 또한 협약기간의 만료시 또는 본 협약의 해지시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자

로 하여금 관리운영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적재산(있는 경우)을 인천광역시에 무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지적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가 위 제1항,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적자산을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3자로부터 허용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 21 조 (부대사업)

-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인천광역시는 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부대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 ③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대사업의 시행과 그 수익의 처리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 22 조 (경미한 수익사업 등)

-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 경미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인천광역시는 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경미한 수익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 ③ 경미한 수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 소요비용, 예상수입, 사업추진방법, 사업수입으로 인정될 경미한 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등은 인천광역시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 ④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가 직접 본 사업부지나 본 사업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사업부지나 본 사업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3 조 (민원처리)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그 발생의 원인에 따라 제27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내지 제30조(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 24 조 (이사회)

- ①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기로 하고, 인천광역시가 이사 1인을 지명한다. 사업시행자는 출자자로 하여금 인천광역시가 지명한 자가 이사로 선임되도록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다.
- ② 이사회의 결의는 본 협약 또는 정관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실시협약의 변경

2. 자금차입계약의 변경

3.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결의

제 5 장 인천광역시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25 조 (인천광역시의 자금제공 및 초과사업수입의 충당)

- ① 인천광역시는 협약기간 동안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금제공의무가 발생한 이상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인천광역시의 자금제공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 ② 매분기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통행료수입(어느 사업연도의 최종 분기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통행료수입 이외의 다른 사업수입을 포함한다)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그 부족 금액을 보조금 또는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인천광역시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전대여를 하는 경우, 당해 금전대여금의 원리금은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전액이 상환된 이후{인천광역시가 제25조(인천광역시의 자금제공 및 초과사업수입의 충당) 제4항에 따라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을 조기에 지급하거나 제34조(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으로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조기상환수수료를 포함한다)의 상환과 함께 출자자에게 감자대금으로 지급한 이후}에 상환한다.
- ③ 어느 분기 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제 수령한 통행료수입(어느 사업연도의 최종 분기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통행료수입 이외의 다른 사업수입을 포함한다)이 당해 분기의 사업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의 선택에 따라 당해 초과된 금액만큼 (가) 위 제2항에 따라 당해 분기 이후 분기에 관하여 발생할 자금제공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나) 아래 제4항에 따라 관리운영권가치상

각액이 조기에 상각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④ 인천광역시는 효력발생일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1회에 한하여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어느 이자지급일로부터 일(1)개월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잔존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의 오십퍼센트(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이자지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금일십억원(₩1,000,000,000) 이상 금일십억원(₩1,000,000,000) 단위의 금액으로 당해 분기 이후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으로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조기상환수수료(있는 경우)를 함께 지급하여야 하고,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으로 조기 지급된 금액은 조기 지급일 이후 도래하는 각 분기의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에 균등 분할하여 충당되며, 조기 지급된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에 대하여는 그 조기 지급된 날로부터 관리운영권가치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의 조기 지급으로 관리운영권가치 전액이 상각되는 경우, 관리운영권가치 전액이 상각되는 날에 본 협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 26 조 (자금제공의 방법)

- ①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본 협약의 해지시까지 매분기의 종료일로부터 일십(10)영업일 이내에 당해 분기의 사업수입 및 사업운영비의 내역과 함께 당해 분기에 관하여 제25조(인천광역시의 자금제공 및 초과사업수입의 충당)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할 금액을 청구한다.
- ② 인천광역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자금제공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월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까지 지급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자금제공금액의 검증을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말부터 3개월 이내 인천광역시가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 당해 사업연도 사업수입에 대한 검증자료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사업연도의 2분기에 관한 자금제공금액 확정시 당해 사업연도 사업수입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정산처리 한다. 다만, 본 협약이 종료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경우 본 협약의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위 사업수입에 대한 검증자료를 제출하고 그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제공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한다.
- ④ 인천광역시가 본 조에 따른 자금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 미이행 금액에 대하여 제2항의 지급기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실제 자금제공을 이행하는 날까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 적용되는 신용공여대출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6 장 위험의 배분

제 27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1.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사유 이외의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해산 및 청산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개시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본 협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및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사업비의 증가, 관리운영비의 증가, 통행료수입의 감소, 기타 손실 등 추가 비용과 손실(보험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추가 비용과 손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제 28 조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1. 인천광역시가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불가항력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함)로 본 사업시설 또는 사업시행권에 대한 몰수 처분을 하는 경우
2.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포함한 인천광역시의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에 정한 인천광역시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로 한다.

제 29 조 (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

- ①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사유라 함은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그러한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하며,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

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불가항력사유는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와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구분하되, 관리운영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의무 중 관리운영자에게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 불가항력사유는 관리운영위탁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사유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어느 협약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위험물이나 유물의 발견
2. 전국적 또는 사회산업 전반의 파업
3. 대한민국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 정책, 경제환경 및 본 사업의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③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④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 제30조(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하며, 협의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유의 처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⑤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사업시설의 복구비용 포함)과 손실은 우선적으로 제13조(보험가입)에 따라 가입된 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보전한다.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로서 보험 가입의 대상이 아

니거나 보험으로 보전되지 아니하는 비용과 손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비용과 손실: 인천광역시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를 부담한다.
2.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비용과 손실: 인천광역시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부담한다.

제 30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라 한다)한다.
- ②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를 수령한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에 대한 이의의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이하 “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라 한다)한다.
- ③ 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가 동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은 제39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한다.
- ④ 불가항력사유 발생통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제2항에 따라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또는 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들 모두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⑤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이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고 불가항력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 7 장 협약의 종료

제 31 조 (협약기간의 만료)

- ① 본 협약은, 제32조(협약의 해지)의 규정에 따라 해지 되지 않는 한, 협약기간의 만료일에 종료된다. 이 경우 제3조(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제5조(사업시행자의 의무)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등 권리와 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협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협약기간의 연장을 인천광역시에게 신청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협약기간 동안 협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협약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협약에 따르기로 한다.
- ② 본 협약이 위 제1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의 만료일 3년, 1년 및 6개월 전에 각 1회씩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가 선정한 전문기관 또는 관리운영자를 포함함)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기간의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인천광역시에게 이전한다.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의 만료시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도록 하며, 완료 후 인천광역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따른 통상적인 마모를 수리·보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35조(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권리와 자산 및 관련 자료와 문서 일체 등을 인천광

역시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재산에 관하여는 제20조(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다.

4. 사업시행자는 협약기간의 만료일 2년전 인천광역시가 정하는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관리운영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반하거나 지연함으로써 말미암아 인천광역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의 관리감독 하에 본 사업시설의 계속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32 조 (협약의 해지)

① 인천광역시에 의한 해지 : 제27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27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아래 제5항의 치유기간 내에 그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할 경우,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해지통지”라 한다)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 제28조(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서 정한 인천광역시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고, 아래 제5항의 치유기간 내에 그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에게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제29조(불가항력사유 및 그 처리) 제1항에 정한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여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본 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⑤ 본 조에서 정한 해지사유(제27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와 불가항력사유는 제외함)가 발생한 경우, 협약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관리운영비나 자금제공금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통지(이하 “해지사유발생통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동 기간 내에 당해 해지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과는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 ⑥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협약의 해지에 따라 가지는 권리나 권한을 제외하고, 관리운영권을 포함하여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나 권한 등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 ⑦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가 지정하는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리 및 보수한 다음 점검을 수행한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본 사업시설을 인천광역시에게 이전한다. 다만,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관련 없는 통상적인 마모와 노후에 따른 기능저하는 예외로 한다.
- ⑧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위 제7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점검, 수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본 협약의 해지 이전에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수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함)은 당해 해지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협약당사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분담한다.

- ⑨ 본 협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설과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하고 인천광역시에 게 안전조치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는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제 33 조 (매수청구권)

- ①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사유가 충족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가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다.
- ② 협약당사자들은 인천광역시가 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가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며, 매수가액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사유에 따라 제34조(해지시지급금)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 34 조 (해지시지급금)

- ① 본 협약 제32조(협약의 해지)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제25조(인천광역시의 자금제공 및 초과사업수입의 충당)에 따라 협약 해지시까지 발생한 자금제공의무의 이행과 별도로 부록 5 (해지시지급금)에서 정하는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는 해지시지급금을 자금차입계약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 중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인천광역시가 사업시행자에

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인천광역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잔존 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인천광역시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총채무의 금액을 해지시지급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가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협약당사자들은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협약당사자들 사이에 해지시지급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만약, 협약당사자들 사이에 전문기관의 지정에 합의가 이루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결정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기관은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협약당사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동 전문기관의 비용은 본 협약의 해지사유에 귀책사유가 있는 협약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본 협약의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 ⑥ 인천광역시는 본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가) 해지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기준사업수익률로 일할하여 산정된 이자를, (나) 해지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의 기간 동안에는 기준사업수익률에 연일퍼센트(1%)를 가산한 이자율로 일할하여 산정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35 조 (협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 ①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본 사업시설 및 관리운영의 원만한 인계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자에게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②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전기설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운영 및 관리 또는 해지 직전 통행료의 부과 및 징수 등과 관련하여 체결 또는 사용 중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및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 인수한다. 다만,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인수는 제20조(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다.
- ③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주요 문서 및 기록, 시공도면, 유지보수계획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및 관리운영자가 본 사업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록한 문서, 도면 등 일체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권리 및 자산의 인계와 제3항의 기록 및 문서 일체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그로 말미암아 인천광역시가 입은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⑤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본 협약의 해지는 협약기간의 만료일 또는 본 협약의 해지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⑥ 어느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더라도 상대방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이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어느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본 협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 협약당사자의 계속적인 본 협약의 위반이나 새로운 본 협약의 위반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⑦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의 청구에 따라 출자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인천광역시에게 양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협약이 중도에 해지되고 인천광역시가 본 협약의 해지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급 받은 해지시지급금으로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조기상환수수료를 포함함)을 상환하고 출자자에게 감자대금을 지급한 이후 인천광역시의 청구에 따라 출자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인천광역시에게 양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권리의 처분

제 36 조 (양도)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제 37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 ① 제27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

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7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제32조(협약의 해지) 제5항의 치유기간 내에 그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서면통지(“대체사업자 추천통지”)로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대체사업자를 인천광역시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이 추천한 대체사업자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에 통지한다.

- ② 인천광역시, 채권금융기관과 수용된 대체사업자 사이에 인천광역시가 대체사업자를 수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자금차입계약상의 의무불이행사유의 시정을 위한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대한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취소하는 서면통지(“취소통지”)를 보낼 수 있고, 인천광역시 또한 대체사업자의 수용을 취소(“수용취소”)할 수 있다. 대체사업자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취소통지나 수용취소가 있는 경우, 대체사업자는 선정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협약 당사자들의 권리는 마치 추천 통지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제 38 조 (출자자 및 주식지분의 변경)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의 출자자나 주식지분의 변경(출자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거나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인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의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분쟁의 해결

제 39 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을 비준속적인 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③ 협약당사자들이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회부하기로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 ④ 협약당사자들이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 본 협약 제40조(중재)에 따른 절차로 해결한다.
- ⑤ 일방 협약당사자가 다른 협약당사자에 지급이 명시된 금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방 협약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원을 지급하고, 분쟁의 해결 시까지 나머지 금액을 보류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일방 협약당사자가 지급이 청구된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경우, 동 사안은 당해 청구 통지의 수취인에 의한 수령 후 제39조(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

제 40 조 (중 재)

- ① 협약당사자들이 제39조(분쟁의 해결) 제3항에 따라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중재법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

- ②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며, 그 중 1인은 인천광역시
가, 또 다른 1인은 사업시행자가 선임하고, 제3중재인은 중재개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위 2인의 중재인들 사이의 합의로 선임하
기로 한다. 제3중재인의 선임에 관하여 위 2인의 중재인들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규칙에 따라 제3중재인을 선
임하기로 한다. 기타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중재법 및 중재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 10 장 기타사항

제 41 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들 모두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 또는 조정되도록 예정
된 수치는 본 협약에 따라 그에 관한 수치가 결정된 때에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결정된 내용으로 본 협약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
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
약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협약기간 동안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 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
약당사자들의 합의로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2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와 그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와 그 승계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43 조 (일부무효)

본 협약의 일부 규정이 위법, 무효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본 협약의 다른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44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본 협약과 본 협약에 따라 협약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약정들은 협약당사자들 사이의 완전한 합의임을 확인하며, 본 협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협약당사자들 사이의 모든 의사표시나 합의에 우선한다.

제 45 조 (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협약기간 동안과 협약기간의 만료일이나 본 협약의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상대방 협약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위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정보가 협약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경우
2. 상대방 협약당사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고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비밀유지의무를 조건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협약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6. 비밀유지의무를 조건으로 협약당사자의 본 사업 관련 상급기관, 시의회, 국회, 시의회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7. 관리운영자, 사업시행자의 수급인, 수입자 및 이들의 하수급인에게 대한 정보의 공개

제 46 조 (통지)

- ① 본 협약에 따른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에 대한 통지

주소 : []

수신 :

참조 :

전화 :

팩스 :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

수신 :

참조 :

전화 :

팩스 :

-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통지는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제2항의 “송달된 때”라 함은 우편인 경우는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그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7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48 조 (협약의 효력)

- ① 본 협약은 효력발생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효력발생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협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기존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기존실시협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협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존속한다.
- ② 본 협약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부록은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③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기타 계약이나 서류들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본 협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해석된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시행령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시장 [] (인)

더케이원적산터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